

제 6조 매출채권의 회수 및 협력

- ① 은행은 제3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합니다.
- ② 제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거래처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그 회수의 시연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니다.

제 7조 매출채권매입대전의 지급시기

본인은 은행이 제3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개별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 받기로 합니다.

제 8조 매출채권의 환매

- ① 은행이 제 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방식의상채권대출이 수반되지 않고 매입한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중도에 취소되거나, 거래처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은행에 대하여 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지며, 즉시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② 은행이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방식의상채권대출을 실행하여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라도,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, 품질, 가격, 사후관리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, 또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지며, 환매절차 및 방법은 '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 제9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'를 준용하기로 합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매출채권이 환매된 때에는 그 매출채권을 본인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. 이 경우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거래처할 통지는 본인의 요청 및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하기로 합니다.
- ④ 본인은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은 해당 매출채권대전을 곧 상환하기로 하며,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.

제 9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

- ① 제7조의 양도대전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용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한 여신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. (거래조건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"□"에 "v" 표시합니다)

| 여신과목 (여신종류) | 전자방식의상채권대출 (빚도형채권) | 거래구분 | 한도거래 |
|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|
| 여신한도금액 | 금 원 | | |
| 여신개시일 | 년 월 일 | 여신기간 만료일 | 년 월 일 |
| 개별여신기간 | 개별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로 하되, 최장 180일 이내로 합니다. | | |
| 이자율 등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금리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%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금리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 + ()%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거래처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| | |
| 지연배상금률 | 지연배상금률은 제9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 연체기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: 연 % 연체기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: 연 % 연체기간이 ()개월 초과인 경우: 연 % | | |
|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|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 | | |
| 여신실행 방법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 | | |
| 상 환 방 법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결제대전 및 회수금 등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 | | |
| 이자의 지급시기 및 방법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실행시에 개별 매출채권 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 | | |

*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③ 본인은 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 10조 인지세의 부담

- ① 이 약정서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제 11조 감액, 정지

-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,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9조에서 정한 한도액 및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 1. 국가경제 ·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
 - 가.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 - 나.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다.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
 - 라.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 ·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
 2. 본인 또는 거래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
 - 가.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,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당행 신용평가에 따른 당해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(2단계 이상 등)한 경우
 - 나.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"부적절/의견거절"로 제시된 경우
 - 다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
 - 라.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양도 분은 곧 반환 받거나 환매하고,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대출 분은 곧 갚기로 합니다.
- ③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,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.



제 12조 대출금의 변제 등

- ① 본인이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은행 소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곧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.
 1. 제8조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.
 2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때.
- ② 본인이 제1항에 의한 변제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연 배상금을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 13조 통지의무

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 거래처의 재산, 경영, 업황,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.

제 14조 양도 · 질권설정의 금지

본인은 은행의 사전의 서면승낙 없이는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합니다.

제 15조 담보권의 이전

본인은 은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곧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, 인적담보(근 담보권을 포함합니다)를 은행 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.

제 16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

-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.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.

| 구분 | 20 | 20 | 20 | 20 | 20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부 채 비 율 | % | % | % | % | % |
| 자기자본비율 | % | % | % | % | % |
| ()비율 | % | % | % | % | % |
| ()비율 | % | % | % | % | % |

-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.
 1. 합병,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, 임대
 2.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
 3.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
 4.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
 5. 기업구조 개선 작업(Work Out)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.
 1.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
 2. 지배주주의 출자
 3.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제 17조 자료의 제출 등

- ①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 1. 매분기 : 부가가치세 신고서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 예상표 등
 2. 매반기 : 반기결산보고서, 부가가치세 신고서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 예상표 등
 3. 매 년 :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(결산재무제표), 연결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주주명부, 정관,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,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(3개년), 주요거래처현황,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(KS,ISO,특허권 등), 노사분규확인서, 기타 제품설명서, 동업계 참고자료 등
 4. 수 시 :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
-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 평가 시 기업의 외환 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 1. 외환 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
 2.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
 3.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

제 18조 협의사항

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.

| | | |
|--|-----|-----|
|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내용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| 본 인 | (인) |
|--|-----|-----|

20 년 월 일

본인 (채무자) : _____ (인)

주 소 :

